

#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김 태 호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는 태권도 진흥과 태권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, 같은 법 제19조에서 태권도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기원은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태권도 진흥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,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

- 이에, 본 의원은 「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태권도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를 규정하고, 태권도의 성지인 국기원에 대한 지원 및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